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4 선고 2022가단534351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1. A

2.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곤

변 론 종 결 2023. 10. 23.

판 결 선 고 2023. 12. 4.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0,194,821원 및 그 중 19,920,935원에 대하여 2022. 11. 9.부터 2022. 11. 21.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21. 6. 30. 체결한 매매계약을 22,963,01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22,963,0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26. 피고 A과 신용보증원금을 2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A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될 원리금상환 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따라 산정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연체이율은 2022. 1. 1.부터 연 8%이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보증서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17. 6. 26.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5%로 정하여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라. 한편 피고 A은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1. 6. 30.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21. 10. 29.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마. 피고 A은 2018. 3. 28. D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E 주식회사, 이하 ‘E’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A, 채권자 E, 채권가액 39,200,000원의 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기로 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10,000,000원이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은 적극재산으로 가액 11,714,450원 상당의 파주시 F 전 1,805㎡ 및 이 사건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C에 대한 대출금 20,000,000원, E에 대한 대출금 10,000,000원, G에 대한 대출금 1,245,000원, H카드에 대한 카드론 대출금 519,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의정부세무서, 고양세무서에 대한 조세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사. 이후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2022. 11. 9. C에 19,920,93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6. 26. 피고 A과 신용보증원금을 2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피고 A은 위 보증서를 제출하고 C으로부터 2017. 6. 26.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A은 이 사건 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따라 산정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연체이율은 2022. 1. 1.부터 연 8%이다.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2022. 11. 9. C에 19,920,935원을 대위변제하였는바, 피고 A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19,920,9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의 C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A은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C에 대한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 B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무자력 상태를 초래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에 대하여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을 구한다.

2) 피고 B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체결한 것이 아니고,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에 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A은 피고 B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고와 이 사건 보증약정을 체결한 상태였던 점, ②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 당시 이 사건 건설기계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으로는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만한 자력이 부족하였던 점, ③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약 1년후인 2022. 6. 18.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킨 점, ④ 그에 따라 원고가 2022. 11. 9.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고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이 적극재산으로 가액 11,714,450원 상당의 파주시 F 전 1,805㎡ 및 이 사건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C에 대한 대출금 20,000,000원, E에 대한 대출금 10,000,000원, G에 대한 대출금 1,245,000원, H카드에 대한 카드론 대출금

519,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의정부세무서, 고양세무서에 대한 조세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A이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피고 B에게 이전함으로써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가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A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B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재정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 A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이 사건 건설기계를 처분한다는 말을 믿고 이를 매수하였을 뿐이라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위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등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 등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부동산 등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부동산 등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채무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2021. 10. 29. 채무자 피고 B, 채권자 피고 A, 채권가액 7,000,000원의, 2022. 3. 2. 채무자 피고 B, 채권자 I, 채권가액 5,000,000원의 각 저당권설정등록이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건설기계의 가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으로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설기계의 가액이 4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건설기계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1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30,000,000원(= 40,000,000원 - 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2,963,012원(= 20,194,821원 및 그 중 19,920,935원에 대하여 2022.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A에게 송달된 날인 2022. 11. 21.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10. 23.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 미만 버림)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22,963,01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2,963,0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학식

별지